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2002년 12월11일 대통령령 제17800호로 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제도연구실

## ○ 대통령령 제17800호

### □ 개정이유

전력기술의 신기술보호에 관한 제도, 설계(設計)·감리업자(監理業者)의 손해배상담보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2002. 3. 25, 법률 제6673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력기술에 대한 신기술(新技術)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5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 나.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등을 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부실(不實) 또는 부적격(不適格)한 업체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설계 또는 감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함(안 제27조의4 신설).
- 라. 설계·감리업자가 설계·감리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제3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을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의 용역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함(안 제27조의5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기술인의 교육훈련의 지원 2. 3.(생략) ③(생략)	제5조(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 -----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이하 "전력기술인"이라 한다)----- 2. 3.(생략) ③(생략)
제7조(신기술의 보호)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이 개발된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다.	제7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배경 2.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현행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보호·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2(신기술의 지정절차)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이 새로운 전력기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의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은 신청된 기술의 심사를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설)	



현행	개정	현행	개정
<p>&lt;신 설&gt;</p>	<p>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⑤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7조의3(신기술의 지정·고시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신기술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1. 신기술의 명칭</p> <p>2.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p> <p>3.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p> <p>4.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내용</p> <p>5.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p>	<p>&lt;신 설&gt;</p>	<p>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p> <p>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 ① 신기술을 개발 또는 개량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는 그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유사한 외국 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거나, 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는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기</p>

현행	개정	현행	개정
	<p>술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p> <p>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 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 자금</p> <p>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p> <p>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p> <p>4.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p> <p>⑤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9조(전력기술인경력수첩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인경력확인신청서에 그 등급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 또는 경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경력확인 및 경력산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감리원에 대하여 직무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종류·대상·기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 고등) ① 전력기술인----- -----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전력기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p> <p>③-----경력확인, 경력산정의 기준 및 경력의 신고·관리 등-----.</p>
<p>&lt;신 설&gt;</p>	<p>제7조의5(신기술의 보호기간) 법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당해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7조의6(감리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감리원의 교육훈련에</p>		







현행	개정
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27조의2(설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작성·공고 대상자) 법 제14조의2제1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

현행	개정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5.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신설>	제27조의3(설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계·감리용역명 2. 설계·감리용역사업시행기관명 3. 설계·감리용역사업의 주요내용 4. 총사업비 및 당해 연도 예산규모 5. 입찰예정시기 6. 그 밖에 입찰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집행계획의 공고를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전력시설물의 설

현행	개정	현행	개정
<p>〈신설〉</p>	<p>제·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기술우위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기술평가기준, 협상방법 등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 ①법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가입기간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의 용역 계약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산업 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p>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의 수리</p> <p>2. 법 제16조의 규정에</p>	<p>2. 가입대상</p> <p>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p> <p>3. 가입금액</p> <p>가. 전력시설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설계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p> <p>나.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계약금액</p> <p>② 설계·감리업자는 당해 설계·감리용역의 계약 체결시에 보험증서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발행하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별첨 1]

전력기술인의 범위(제3조 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증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등급	국가기술자격증	학력·경력자	경력자
중급 기술자	○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1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무를 수행한 자

비 고

-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 나. 기능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다.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마. 기능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학과외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별표 2]

감리원의 자격 (제21조제1항관련)

등급	국가기술자격증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감리원	○기술사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	

등급	국가기술자격증	학력·경력자	경력자
고급 감리원	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감리원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감리원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7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1. 위 표에서 "국가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다음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가. 기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건축전기설비, 전기안전
  - 나. 기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 다.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 철도
  - 마. 기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2. 위 표에서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범위, 학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라 함은 전력기술관련학과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전력기술 관련분야에서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설계 감리·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안전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발전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주특기를 부여받고 근무무를 한 자를 말 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를 준용한다.

[별표 4]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7조제1항관련)

종류	등록 기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 계업	전기분야기술사2인 설계사 2인 설계 보조자 2인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 계도서의 작성
전문 설계 업	전기분야기술사1인 설계사1인 설계보조자 1인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 계도서의 작성

종류	등록 기준		영업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전문 설계 업	2 종	설계사1인 설계보조자 1인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비 고

1. 설계보조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전력기술인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 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된 자가 설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한다.

[별표 5]

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7조제1항관련)

1. 감리업의 등록기준

종류	등록 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장 비 명	대수
종합 감리업	특급감리원 2인 이상, 고급감리 원 2인 이상 및 중급감리원 2인 이상을 포함한 8 인 이상의 감리 원	1억원 이상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3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3
			절연저항측정기 (1만볼트)	1
			접지저항측정기	3
			혹크온메타	3
			고압특고압검전기	3
			저압검전기	3
			마이크로메타	3
			멀티테스타	3
			바나나칼리퍼스 조도계	1

종류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	보유장비	
전문 감리업	특급감리원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감리원	5천만원 이상	장비명	대수
			절연저항측정기 (500볼트)	1
			절연저항측정기 (1천볼트)	1
			절연저항측정기 (4만볼트)	1
			접지저항측정기	1
			혹크온메타	1
			고압특고압검전기	1
			저압검전기	1
			마이크로메타	1
			멀티테스타	1
			버니어캘리퍼스	1
조도계	1			

## 2. 감리업의 영업범위

종류	영업범위
종합감리업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발·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성실은 만사(萬事)의大本(大本)이며  
모든 재능의 최대요소이다.**

-칼라인(영국의 사상가·역사가·문필가, 1791~1881)-

### 비고

1. 기술인력중 50퍼센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2.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금에 포함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로 등록된 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5. 설계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감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자본금은 위 기준에 포함된다.

## 알림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이 2002. 12. 11 공포되어 이번호에 개정령 전체를 게재하는 관계로 “제65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④” 문제해설과 전번호에 안내한 “건축설비분야 KS규정 개정고시알림”의 한국공업규격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지 못하고 2003년 2월호 부터 게재할 예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팀장-